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도입 등〉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4호)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도입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09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8
1. 제21대 국회 심사 경과	8
2. 제정안의 취지	8
(1) 제정안의 구성체계	8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12
(3) 관계기관 의견	15
3. 법률 제정 필요성	19
4. 제정안 내용별 검토	22
(1) 법률의 제명	22
(2)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29
(4) 제8조 및 제9조: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 ...	36

(5) 제10조 및 제11조: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등	46
(6) 제12조 및 제13조: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51
(7) 제14조: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58
(8)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농수산물 대금결제 및 수수료	62
(9)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 회의 설치 등	68
(10)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거래질서의 유지 및 교육훈련 등 ·	72
(11)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보칙 관련	76
(1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벌칙	86
(13) 부칙	91

※ 참고자료

[참고1] 농산물 유통구조	93
[참고2] 공영도매시장 일반 현황('22년 기준)	94
[참고3]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요	95
[참고4] 온라인도매시장 유통혁신 사례	96

I. 제안경위

1. 김현정의원안(2200164)

가.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김도읍의원안(2201109)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8.

다.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현정의원안(2200164)

제안이유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 문제가 지목되고 있음.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 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로 이어지는 거래단계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와 같은 비효율 등으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이 법률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통해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부류(部類)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2. 김도읍의원안(2201109)

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이에 정

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부류(部類)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 및 제9조).

마.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

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제21대 국회 심사 경과

2건의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가결(2024. 2. 1.)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 2. 1.) 이후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음(2024. 5. 29.).

2. 제정안의 취지

(1) 제정안의 구성체계

김현정의원안과 김도읍의원안은 개별 도매시장 단위의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 단위 농산물 및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됨.

김현정의원안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김도읍의원안은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나, 두 제정안의 취지 및 구성체계는 유사함.

1) 의안번호 2120844,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두 제정안은 5개의 장에 총 32개의 조문, 부칙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준거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의 구조를 차용하되, 온라인도매 거래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신설·수정하였음.

[제정안의 구성]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 정의	
제2장 시장의 개설 및 유통주체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	제10조(경매사의 임면)
제7조(온라인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제11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3장 시장의 운영	
제12조(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제16조(농산물의 대금결제) 김현정의원안
제13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	제16조(농수산물의 대금결제) 김도읍의원안
제14조(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김현정의원안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4조(출하 농수산물의 안정성) 김도읍의원안	제1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매매 농산물의 인수의무) 김현정의원안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5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김도읍의원안	제20조(거래질서의 유지)
	제21조(교육훈련)
제4장 보칙	
제22조(보고)	제26조(과징금)
제23조(검사)	제27조(청문)
제24조(명령)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5조(업무의 정지 등)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부칙	

“제1장 총칙”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과 “온라인거래플랫폼” 등을 정의하고, 제정안이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제2장 시장의 개설 및 유통주체”에서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제3장 시장의 운영”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도매 방식 및 매매방법 등을 정하고, 온라인도매판매자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및 농(수)산물 출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명시하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정하고 있음.

“제4장 보칙”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²⁾이 시장운영자에게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및 과징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5장 벌칙”에서는 벌칙, 과태료 및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2) 김현정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체, 김도읍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체

[제정안의 비교]

구 분		김현정 의원 ('24.6.5)	김도읍 의원 ('24.6.28)
제1장 총칙 (제1조 ~제3조)	법명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목적	농산물 유통 효율성 증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좌동
	대상품목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제7호
제2장 시장의 개설 및 유통주체 (제4조 ~제11조)	시장의 개설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운영	농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운영
	플랫폼 구축·운영	농식품부장관이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구축 운영하게 함	좌동
	판매자 인가	농산물 부류별로 농식품부장관에게 인가	농수산물 부류별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인가
	구매자 인가	농식품부장관에게 인가 인가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함	좌동 인가절차는 농식품부령 또는 해수부령으로 정함
	경매사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식품부령에 정하는 경매사를 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식품부령 또는 해수부령에 정하는 경매사를 둠
제3장 시장의 운영 (제12조 ~제21조)	도매의 방식	직접 판매(산지 농협, APC 등) / 출하자로부터 위탁(도매시장법인), / 매수하여 도매(시장도매인)	좌동
	품질관리 (안전성 등)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준규격 및 안전기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대금결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도록 함	좌동
	수수료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가능한 수수료 범위와 요율 규정	좌동
	위원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9명)를 둠	좌동
	거래질서 유지	장관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	좌동
제4장 보칙 (제22조 ~제28조)	보고·검사	장관은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구매자의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검사할수 있도록 함	좌동
	업무정지	장관은 온라인도매판·구매자가 시장질서 등을 해칠 경우 업무의 정지(6개월내)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좌동
제5장 벌칙 (제29조 ~제32조)	벌칙 등	농안법 체계를 고려하여 법 위반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	좌동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형태·구성과 관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은 전국 단위 시장임. 물류는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류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음(先 물류 後 거래 → 先 거래 後 물류)(안 제4조, 제6조 등).

②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거래 주체와 관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은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고, 거래 주체인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aT를 시장운영자로 지정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등).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자>

- ▶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①산지로부터 위탁(기존 도매시장법인) 또는 ②매수(기존 시장도매인) 방법으로 물량을 수집하여 도매, ③직접 판매 방식으로 도매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 행정청 인가(5~10년 유효기간 설정)
- ▶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 행정청 인가(5~10년 유효기간 설정)
 - * 기존 중도매인 외 대형마트, 식자사업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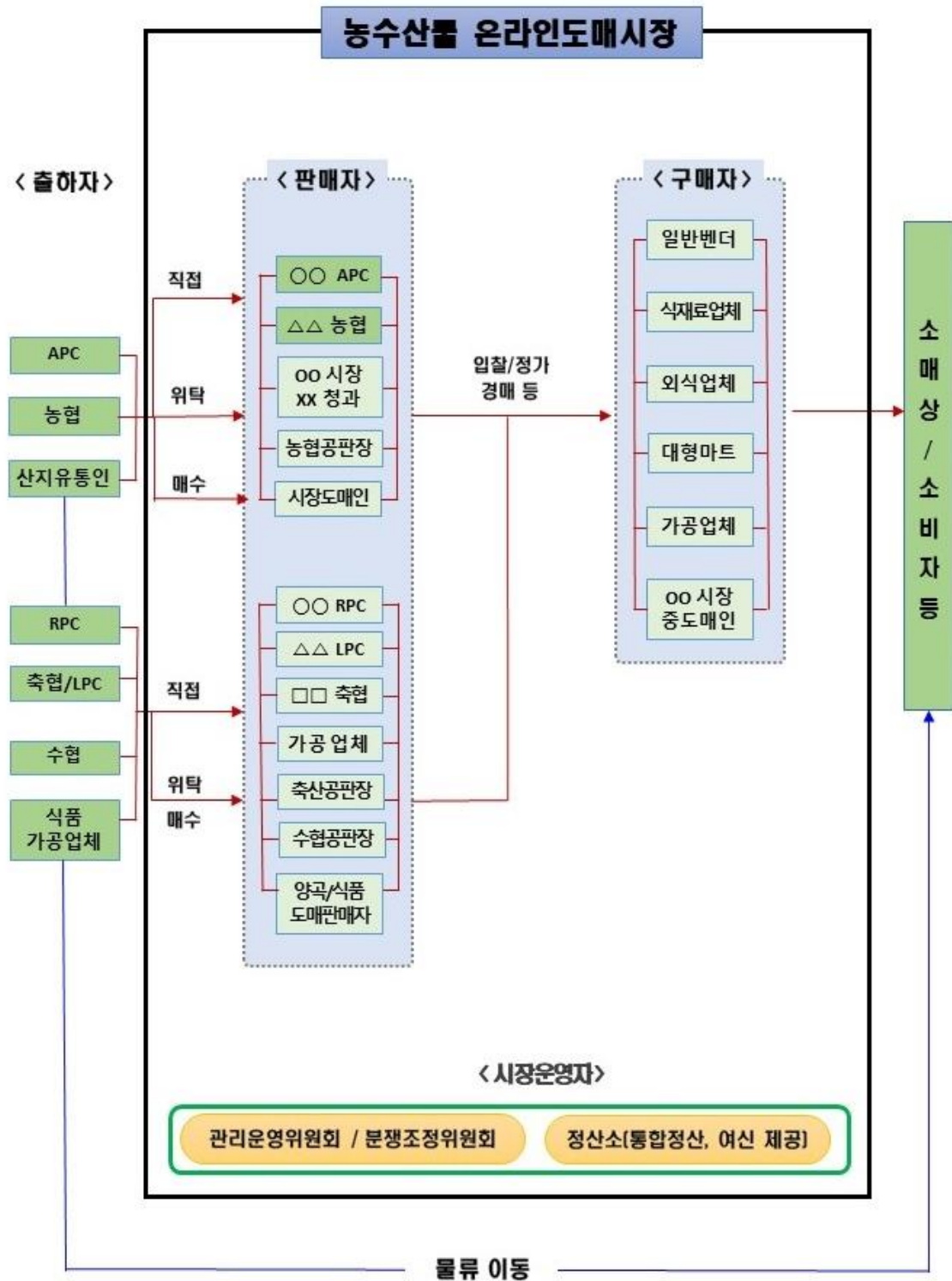
- ③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성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 ④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김현정의원안은 농산물을 거래 대상 품목으로 하며, 김도읍의원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거래 대상 품목으로 함(안 제2조).
- ⑤ 온라인도매에 따른 수수료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보다 수수료 상한을 낮게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이용·정산 수수료) 및 판매자(위탁 수수료)가 수수료를 결정토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오프라인 도매시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 수수료 비교>

오프라인도매시장	온라인도매시장
▶ 시장사용료 : 0.5% ▶ 정산수수료 : 0.4% ▶ 위탁수수료 : 최대 7%(청과)	▶ 플랫폼사용료 : 0.3%('24.~'26년간 면제) ▶ 정산수수료 : 0.2%('24. 면제) <도매법인 위탁시> ▶ 위탁수수료 : 최대 5%(청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모델>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관계기관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 추진을 국정과제³⁾로 선정하고, 온라인도매시장 도입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하여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⁴⁾을 추진하고 있음.

시범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30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음. 이후 수산물 거래개시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4년 5월 기준 거래실적 719억원을 달성하였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⁵⁾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 중인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

3)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2022년 5월 선정)

4) 2023회계연도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4,862	4,862	-	4,862	4,862	-	-	10,434

5) 규제샌드박스 개요

-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령규정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년간(최대4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법* 근거법에 근거하여 시행

* ① 산업융합촉진법 ② 정보통신융합법 ③ 금융혁신지원특별법 ④ 지역특구법

【 온라인도매시장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내용 】

- ☐ 사업명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 실증특례 지정번호 : 2023-19-2호
- ☐ 실증특례 지정사실
 - 유효기간 : 2023.10.04.~2025.10.03.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판·구매자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 ☐ 이용자 유의사항
 - (지역) 전국 어디서든 거래주체 간 거래
 - (이용주체) 농수산물 도매거래 사업자 간 거래 (* 단,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거래 확보를 위해 각 거래주체는 각각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승인받아야 함)
 - (품목) 청과부류, 축산부류, 양곡부류, 수산물 및 가공식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별도 정책 수립
- ☐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자상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
 - 이의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온라인소매거래(B2C)가 급증하였으나 기업간 거래(B2B)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영도매시장은 관행적 거래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인 디지털전환에 적응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 도입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임.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초기에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거래당사자 등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온라인 거래의 핵심은 신뢰에 있으므로, 거래가 적은 초기 상황에서 부족한 신뢰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공영도매시장 상장매매 중 경매를 통한 거래가 80%를 상회하는 가운데, 경매 방식은 시간·장소의 제약이 불가피함.

정부가 2007년도에 상·물분리 취지의 전자거래를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도매시장법인의 입장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의 도입은 기존 거래대상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급대상과 거래 가능하여 새로운 거래의 장이 생기는 효과로, 상·물 분리거래로 거래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한국농수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개정안에 따라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 도입되는 경우 유통구조의 효율적 개선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관행적 소속제 거래의 폐단을 해소하고 경쟁 제한으로 인한 구매자(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수렴이 취약한 현 구조를 개선하여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도매인의 입장에서 동 제도는 중도매인이 산지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락시장과 그 외

도매시장 간의 편차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출하자, 출하자단체가 온라인도매시장에 진출하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산물 유통환경은 ICT 발전,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유통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도매유통의 변화 필요하므로, 온라인도매시장의 도입은 산지와 중도매인 간 또는 산지와 리테일 간 B2B직거래가 가능하여 농업인 및 산지조직의 출하 선택권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임.

또한 물류비가 절감되고 유통비용 감소와 농가소득 및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고 장소가 없는 오픈마켓으로서 벽지 등에도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중장기적으로 통합 물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및 산지는 경험이 부족하고 제도 적응에 장시간 소요되므로 관련 교육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법률 제정 필요성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중소농어가의 시장교섭력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농수산물 분산과 효과적인 가격발견 역할을 수행하며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되었음.

매매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형(商物一致形) 거래에 따른 물류 비효율 및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 분할·점유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수산물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2023. 1. 17.)하였음.

특히, 도매기능 혁신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분야	중점 추진 과제
1.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①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 ②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③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2.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① 판·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② 경쟁력 있는 판·구매 주체 육성 ③ 법·조직 등 인프라 구축
3.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 ② 물류기기 시장 경쟁 확대
4.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 ②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 자료 :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이상 절감”

현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⁶⁾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 중임. 농수산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① 산지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 ② 도매법인의 제3자판매(가공업체, 중소형마트, 식자재업체 등 판매), ③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수집(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음)가 허용되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과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발전해 나가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6) 규제샌드박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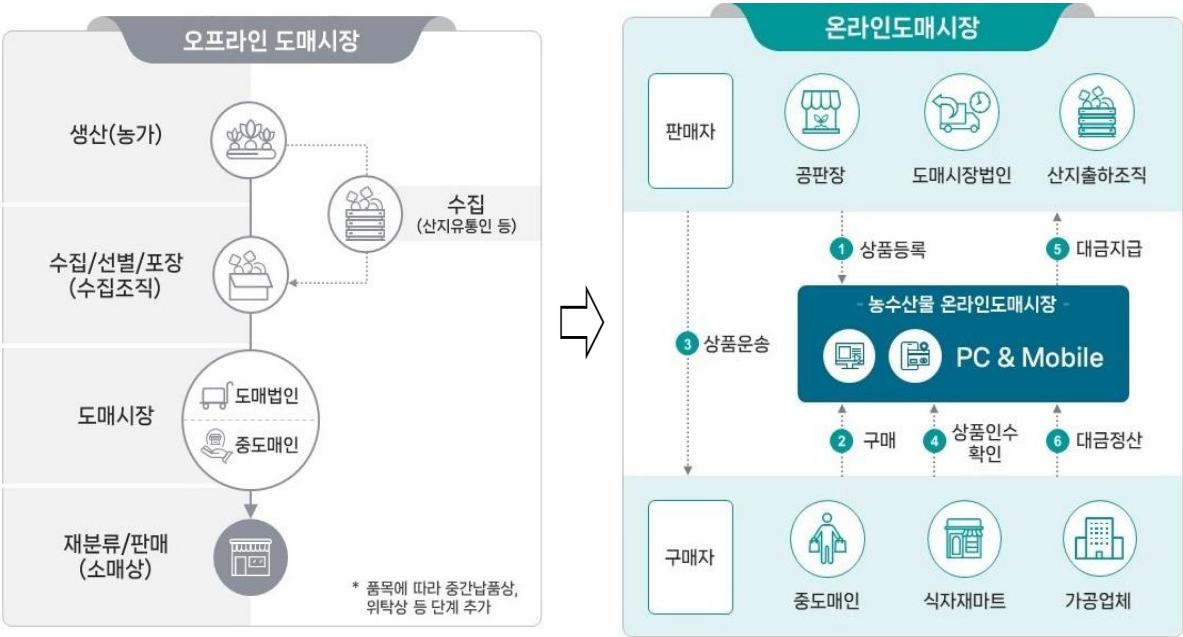
-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령규정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년간(최대4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4法* 근거법에 근거하여 시행

* ① 산업융합촉진법 ② 정보통신융합법 ③ 금융혁신지원특별법 ④ 지역특구법

<온라인도매시장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 제정안 내용별 검토

(1) 법률의 제명

각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김현정의원안은 제명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로, 김도읍의원안은 제명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음.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명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명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두 제정안은 개별 도매시장 단위의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 단위의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임.

그런데 온라인도매시장이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 당시 명칭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었으나, 이후 수산물 거래개시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대상품목을 고려할 때, 법률의 제명도 김도읍의원안과 같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⁷⁾.

7) 이하에서도 촉진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도매거래의 품목으로 “농수산물”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하였음.

(2)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의 목적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함.

안 제2조(정의)는 “농산물”, “수산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 등을 정의함.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함.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농산물</u>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u>농산물</u>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농수산물</u>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u>농수산물</u>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과 그 수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2. “<u>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u>”이란 <u>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양곡류·청과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u>품목</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3. “<u>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이란 제6조에 따라 <u>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서 <u>농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농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u>가 <u>농산물</u> 거래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수단 및 시스템을 말한다. 4. “<u>농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u>”란 <u>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서 농산물을 <u>농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u>에게 판매하는 자로 제8조에 따라 인가받은 자를 말한다. 5. “<u>농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u>”란 <u>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서 <u>농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u>로부터 <u>농산물</u>을 구매하는 자로 제9조에 따라 인가받은 자를 말한다. 6. “<u>경매사</u>”란 <u>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 상장된 <u>농산물</u>의 가격 평가 및 경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u>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u>”이란 <u>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양곡류·청과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u>품목</u> 및 <u>어류·패류</u> 등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u>품목</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4. “<u>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이란 제6조에 따라 <u>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서 <u>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u>가 <u>농수산물</u> 거래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수단 및 시스템을 말한다. 5. “<u>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u>”란 <u>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서 <u>농수산물</u>을 <u>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u>에게 판매하는 자로 제8조에 따라 인가받은 자를 말한다. 6. “<u>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u>”란 <u>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서 <u>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u>로부터 <u>농수산물</u>을 구매하는 자로 제9조에 따라 인가받은 자를 말한다. 7. “<u>경매사</u>”란 <u>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u>에 상장된 <u>농수산물</u>의 가격 평가 및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u>농산물</u>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u>농수산물</u>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거래 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농안법」 제2조제1호8)에 따라 ‘농수산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농안법」에 따른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은 신속한 수집·분산, 효과적인 가격 발견 및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였으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형 거래 및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8) 「농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제정안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각 용어의 뜻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정안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및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를 이 법에서 새롭게 정의하였음.

또한, 제2조제1호에서 “농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⁹⁾과 그 농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여, 농업 분야의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수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¹⁰⁾과 그 수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여, 수산업 분야의 기본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물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대상 품목을 청과류를 시작으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로, 양곡류·축산류·수산물 등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까지 거래 품목으로 편입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목 확대 계획>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수산물 유통은 「농안법」¹¹⁾ 및 「유통산업발전법」¹²⁾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관계 법률 간 우선 적용 순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법률 해

- 11) 「농안법」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석 간 상충이 발생하여 도매유통체계가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법령 상호 간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거래 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농안법」 제2조제1호¹³⁾에 따라 ‘농수산물’을 정의(안 제2조제1호)하고, 어류·패류 등 수산물 품목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품목으로 명시(안 제2조제3호)할 필요가 있음.

13) 「농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안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 한다)이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는 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안 제7조(온라인도매시장의 업무규정)는 시장운영자가 거래 참여자의 규모·선정·등록방법 등을 업무규정으로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농산물</u>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u>농산물</u>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농수산물</u>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u>농수산물</u>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u>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4.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물류 효율성 개선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니면 <u>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u>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4.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물류 효율성 개선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니면 <u>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 한다)은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할 경우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 한다)은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할 경우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u>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 (이하 “온라인거래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온라인거래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시스템 2. 온라인도매시장 내 상품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3. 대금정산 및 여신관리 시스템 4. 배송정보 연계 시스템 5. 고객지원 시스템 6.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및 시장운영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과 <u>농산물</u>의 안전성 및 수급에 관한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u>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u> (이하 “온라인거래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온라인거래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시스템 2. 온라인도매시장 내 상품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3. 대금정산 및 여신관리 시스템 4. 배송정보 연계 시스템 5. 고객지원 시스템 6.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u> 및 시장운영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과 <u>농수산물</u>의 안전성 및 수급에 관한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유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온라인거래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온라인도매시장의 업무규정) ①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의 관리, 거래 참여자의 규모·선정·등록방법, 거래방법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운영자는 제1항의 업무규정을 마련(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 종합정보시스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온라인도매시장의 업무규정) ①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의 관리, 거래 참여자의 규모·선정·등록방법, 거래방법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운영자는 제1항의 업무규정을 마련(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③ 시장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의 승인을 받는 즉시 업무규정을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의 승인을 받는 즉시 업무규정을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면서도,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소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¹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농안법」 제17조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고, 도매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중앙도매시장¹⁵⁾과 그 외의 지방도매시장¹⁶⁾으로 구분됨.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의 규모와 관할구역 내 파급력을 고려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

14) 각 조문별로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성 후 업무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① 시가 개설자인 경우,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② 도지사가 개설자인 경우, 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전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¹⁷⁾.

또한, 「농안법」 제21조¹⁸⁾는 도매시장 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8)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 절차 비교>

구 분	개설자	운영관리계획서	업무규정
중앙도매시장	도지사	개설 전 작성	장관 승인
지방도매시장	도지사	개설 전 작성	개설 전 작성
	시	도지사 제출	도지사 제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은 「농안법」 체계를 준용하여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시장운영자)이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aT로 하여금 시장운영자로서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¹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은 시장운영자가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업무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이 전국 단위의 도매거래를 위한 거래소임을 고려하여 중앙도매시장의 입법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의 체계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9)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거래플랫폼 구축,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시장 운영 및 관리업무 담당

(4) 제8조 및 제9조: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

안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는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요건을 정하고, 도매판매자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부류 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며,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온라인도매판매자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임.

안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요건을 정하고, 도매구매자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며, 「농안법」에 따른 중도매인은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① <u>농산물</u> 온라인도매판매자(이하 “온라인도매판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u>농산물 부류(部類)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① <u>농수산물</u> 온라인도매판매자(이하 “온라인도매판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u>농수산물 부류(部類)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u>법인</u>	②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u>법인</u>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u>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③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및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제9조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u> 승인을 받을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생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u>경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u>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③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및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제9조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u>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유효기간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와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생산자 관련 단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⑥ 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	<u>부장관의 승인을</u> 받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유효기간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와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생산자 관련 단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⑥ 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온라인도매 판매자의 인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① <u>농산물</u>온라인도매구매자(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온라인도매구매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가 취소(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	는 바에 따라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온라인도매 판매자의 인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① <u>농수산물</u>온라인도매구매자(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온라인도매구매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가 취소(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7.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유효기간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⑤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u>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u>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7.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유효기간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⑤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u>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u>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온라인도매 구매자의 인가절차와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온라인도매 구매자의 인가절차와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 으로 정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함.

① 판매자의 경우 부류제한 폐지('24.5.22.)에 따라 인가권자를 농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되, 수산부류만 취급하는 판매자는 해수부장관 인가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② 법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판매자 인가를 개인사업자에게 허용('24.6.27)함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③ 판매자 자격요건 완화(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 거래규모 등) 기초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④ 직접판매자의 구매자 병행은 허용하였으나, 의제인가 판매자인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구매자 병행 금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⑤ 수산부류 추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⑥ 온라인도매시장에서 aT의 비축물자 취급에 따라 판매자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⑦ 의제인가 구매자인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자 병행 금지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농안법」은 도매시장 유통 주체를 농산물 수집 기능을 수행하는 ① ‘도매시장법인’과 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② ‘중도매인’, 수집·분산 기능이 통합된 ③ ‘시장도매인’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음.

구 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역할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도매시장에 상장하고, 경매에 의해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위탁 상장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음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수의매매, 정가입찰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매상과 대량수요자에게 판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고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우 지정제²⁰⁾²¹⁾로, 중도매인의 경우 허

20)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가제22)로 운영되고 있음.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22)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

제정안은 온라인도매 주체에 대하여 인가제를 도입하고, 「농안법」의 지정 요건 및 각 유통 주체의 금지 행위를 차용하여 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도매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첫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시 판매자는 청과, 축산, 양곡 등 거래부류별로 가입토록 하여 선택한 부류 외에 다른 부류는 판매할 수 없었음.

그러나 '24.5.22. 부류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거래가능 상품 확대를 통한 구매자 유입 강화, 이용자의 자유로운 시장 이용을 통한 영업력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안 제8조제1항)

둘째, 당초 도매거래 안정성을 위해 법인사업자에게만 허용하였던 판매자 인가를 개인사업자에게도 허용('24.6.27)하였음. 이는 민간 RPC 등의 참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임.

온라인도매거래판매자 범위의 확대로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

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있음(안 제8조제2항)

셋째,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자격요건은 거래규모 20억원 수준임.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안의 판매자 자격요건도 완화(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 거래규모 등)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시범 운영 시 100억원이었던 판매자 거래규모가 50억원, 20억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한 바 있음(안 제8조제2항제5호).

넷째, 의제인가자인 거래주체인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판·구매자 병행 허용은 사실상 거래주체의 매수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수취가 하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제4항).

다섯째,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업체와 비축농산물 구매업체는 식품가공업체,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으로 수요 주체가 유사함. 이에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축물자를 취급하는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8조제5항).

여섯째,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구매자 인가 주체는 농식품부장관이므로,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함(제9조제6항).

(5) 제10조 및 제11조: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등

안 제10조(경매사의 임면)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 도매판매자는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경매사 임면 요건을 정하고 있음.

안 제11조(경매사의 업무 등)는 경매사는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정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가격평가·경락자의 결정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0조(경매사의 임면) ①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u>농산물</u> 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제10조(경매사의 임면) ①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u>농수산물</u> 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 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경매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② 경매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 5. 제25조제3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장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산물</u>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산물</u>에 대한 가격평가 3.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산물</u>	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 5. 제25조제3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 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장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수산물</u>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수산물</u>에 대한 가격평가 3.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수산물</u>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산물</u>의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u>농수산물</u>의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다양한 거래방식 구현을 위해 경매제가 운영될 수 있고 이 경우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경매사를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농안법」 23)에 따르면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경매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뢰, 사전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르는 경우²⁴⁾ 공무원으로 보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경매사 자격증 보유 및 임명 현황(2022년)>

구 분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훼	양 곡	약 용	계
자격증 보유	4,333	1,045	321	215	20	18	5,952
도매시장 임명	1,026	135	14	0	0	4	1,17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경매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농안법」과 동일하게 경매 우선순위 결정 및 가격평가 등임. 제정안은 임면 요건을 법률에 규율하여 경매사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제정안 제2조제7호²⁵⁾에 따르면 경매사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제정안 제12조제3항²⁶⁾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24)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2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경매사”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26)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③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경매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하는 제정안의 규정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6) 제12조 및 제13조: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안 제12조(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는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도매 방식으로 ①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②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 ③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을 정하고, 매매 방법으로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를 정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는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2조(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농산물을</u> 직접 판매하는 방식 2. <u>농산물을</u>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 3. <u>농산물을</u>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농수산물</u>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2. <u>농수산물</u>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 3. <u>농수산물</u>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u>농림축산식품부령</u> 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③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④ <u>농산물을</u>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한 <u>농산물을</u>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 또는 온라인거래플랫폼 상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 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③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 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④ <u>농수산물을</u>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한 <u>농수산물을</u>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 또는 온라인거래플랫폼 상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 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 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면서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다양한 거래방식 구현을 위해 발주, 역경매 등의 방법 추가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도매시장의 청과물 유통경로는 기존의 경매방식²⁷⁾과 2000년에 도입한 시장도매인방식²⁸⁾으로 구분되고 있음.

「농안법」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① 매매방법²⁹⁾과 ②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³⁰⁾, ③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³¹⁾ 사항을 정하고 있음.

27) 도매시장에 출하·상장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 주관으로 경매하고, 이를 “중도매인”이 낙찰받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28)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직접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거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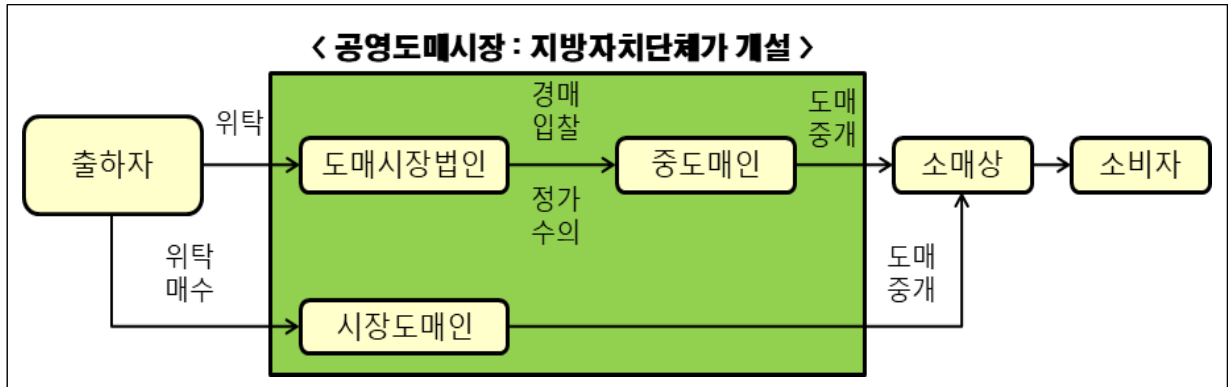
29)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30)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도매시장 거래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구분>

구 분	내 용	근거
경매	실시간 호가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입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가격을 투찰하도록 하고, 종료 시간에 최고가 응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통상 비공개	
정가매매	판매자가 가격과 물량을 정하여 제시하고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보여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	
수의매매	판매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구매자와 1:1로 협의하여 가격 및 물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정가매매는 ‘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래 상대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수의매매는 ‘거래 상대를 먼저 정하고 이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정의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31)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안법」은 도매시장의 도매 주체를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 도매인으로 한정하고, 각 도매 주체의 도매 방식을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 ‘위탁’받거나 ㉡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³²⁾.

반면, 제정안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시행할 수 있는 도매 방식을 ①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②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 ③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으로 구분함으로써,

‘①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산지 생산자단체(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협동조합연합회 등)가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농가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32) 「농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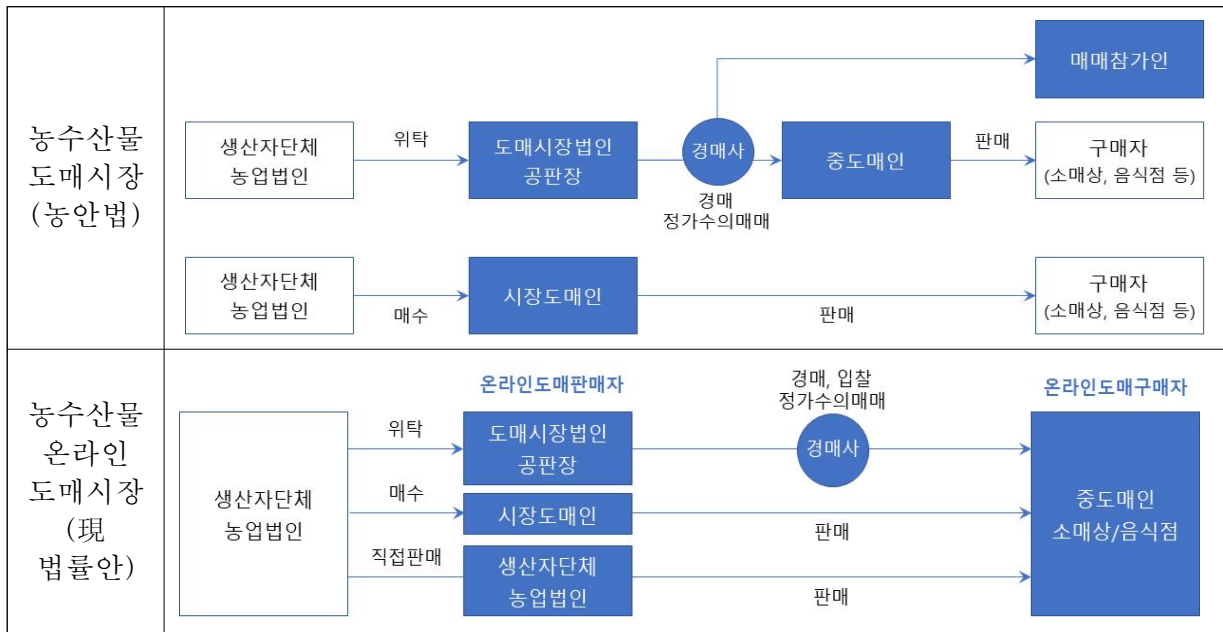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유통구조 비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제2항은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은 “②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만, 시장도매인은 “③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유통 주체의 매매 방식을 「농안법」보다 한정하고 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제정안과 같이 각 유통 주체의 매매 방식을 「농안법」보다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을 오프라인도매시장에 도입하였던 당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온라인도매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됨.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주체들의 매매 방식을 일부 한정된 것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도매시장과 달리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온라인도매구매자도 발주, 역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도매거래 방식 예시>

- (경매) 지정 경매 시간*에 실시간 투찰하여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
 * 원활한 경매 진행을 위해 품목별 경매시간 별도 설정
- (입찰) 일정 시간 동안 다수의 구매자가 투찰하고, 최고가를 제시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 동일 가격일 경우 먼저 입찰한 순서대로 낙찰
- (정가) 판매자가 올린 거래정보 및 가격을 구매자가 확인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판매자의 응답(승인/거절) 후 거래 체결
- (수의) 판매자가 구매자를 지정해서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
- (발주거래) 구매자가 구매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선택한 후 거래 체결하는 방식
- (역경매) 구매자가 다수의 판매자를 경쟁시켜 거래 체결하는 방식
- (예약거래) 판매자가 미래시점에 판매할 상품을 현재 시점에서 판매 등록하면, 구매자가 조건 확인 후 현재 시점에서 구매를 확정하고, 판매자는 제시한 미래시점에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 제14조: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안 제14조(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4조(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14조(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①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u>농산물</u>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되는 <u>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u> 「농수산물 품질관리	<u>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표준규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u> ② 온라인도매시장의 <u>농수산물</u>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되는 <u>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u>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제1항의 출하자에 대해</u>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u>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제1항 및 제2항의 출하자에 대해 표준규격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면서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농수산물 표준규격 표시는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농안법」 제38조의2³³⁾는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를

33)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³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는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을 출하 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준규격품이 아님에도 거짓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의무³⁵⁾ 및 표준규격 표시 의무³⁶⁾를 “출하자”에게 부여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 대상 농산물이 출하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즉

34)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5)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모두 해당 내용 규정

36) 김도읍의원안에서만 해당 내용 규정

시 배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의무 및 표준규격 표시 의무를 출하자에게 부과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³⁷⁾는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김도읍의원안은 표준규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도매시장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

37)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의무, 농수산물
대금결제 및 수수료

안 제15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의무)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구매자는 배송된 농산물을 확인한 즉시 농산물을 인수하여 구매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16조(농산물의 대금결제)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는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법률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5조(매매 <u>농산물</u> 의 인수 의무)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거래가 체결될 경우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u>매매 농산물</u> 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따른다. ②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제1항에 따라 배송된 <u>농산물</u> 을 확인한 즉시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 그 <u>농산물</u> 을 인수하여야 하며 온	제15조(매매 <u>농수산물</u> 의 인수 의무)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거래가 체결될 경우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u>농수산물</u> 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따른다. ②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제1항에 따라 배송된 <u>농수산물</u> 을 확인한 즉시 <u>농림축산식품부령</u> 또는 <u>해양수산부령</u> 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 그 <u>농수산물</u>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고 구매를 확정하여야 한다.	을 인수하여야 하며 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고 구매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농산물의 대금결제) 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도매한 <u>농산물</u>을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②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u>농산물</u>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에서 정한다.	제16조(농수산물의 대금결제) 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도매한 <u>농수산물</u>을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②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u>농수산물</u>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에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운영자가 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사용료 2. 온라인도매판매자가 <u>농산물</u>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정산하고자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장운영자에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운영자가 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사용료 2. 온라인도매판매자가 <u>농수산물</u>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정산하고자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장운영자에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게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u>농림축산 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게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u>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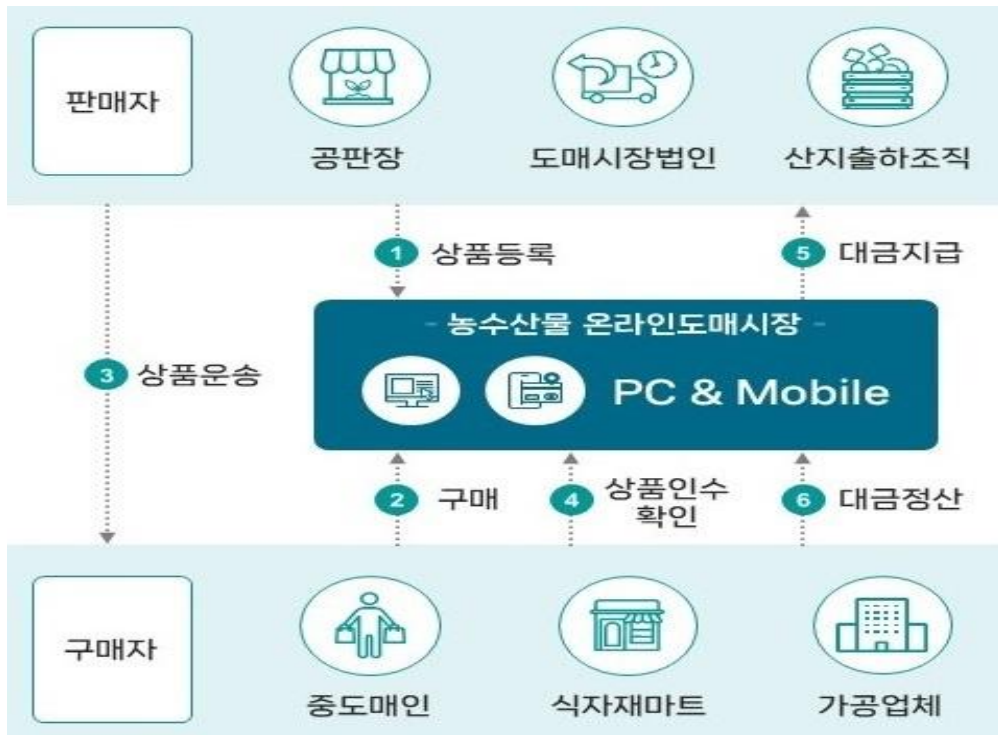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온라인도매시장은 상류와 물류의 분리를 통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류가 최적화된 시장을 지향하고 있고,

① 판매자의 상품 등록, ② 구매자의 상품 구매, ③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 배송, ④ 구매자의 상품 인수, ⑤ 시장운영자의 판매자에 대금 지급, ⑥ 구매자로부터의 대금 정산 단계 구조를 예정하고 있음.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안법」 제39조³⁸⁾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안법」 제41조³⁹⁾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

38)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差損金)이 생겼을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한다.

39)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

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안법」 제42조⁴⁰⁾는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법률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의무, 대금결제,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수산물 출하자 등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취 할 수 있다는 점, 기존의 도매시장 구조를 차용하여 이용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0)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정산 방식별 주요 이용 대상>

정산 방식	주요 대상
현금 또는 카드	○ 일시 이용자 등
정산소 여신 제공	○ 지방 중도매인과 가락 법인 등 법인-중도매인간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개별 약정	○ 기존시장에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여신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로,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수료의 상한을 오프라인매장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하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있음.

<오프라인도매시장 및 온라인도매시장 수수료 비교>

오프라인 도매시장		온라인도매시장	
구분	수수료 한도	구분	수수료 한도(안)
시장 사용료 (판매주체* → 개설자) *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거래금액의 0.5% (가락시장 0.55%)	플랫폼 이용수수료 (판매자 → 시장운영자)	거래금액의 0.3%
시설 사용료 (도매법인 등 → 개설자)	연간 시설 재산가액의 5% (중도매인은 1%)		
정산수수료 (중도매인 등 → 정산조직) * 대부분 정산조직 미이용	거래금액의 0.4%	정산수수료 (여신 제공 등 정산소 이용 구매자 → 시장운영자)	거래금액의 0.2%
위탁수수료 (출하자 → 도매법인)	청과 : 거래금액의 7% (양곡2, 축산2, 수산6 등)	위탁수수료 (출하자 → 판매자)	청과 : 거래금액의 5% (양곡2, 축산2, 수산5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1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안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제1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관한 사항 6. 거래 <u>농산물</u>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운영자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한 사항 6. 거래 <u>농수산물</u>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 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운영자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면서도, 온라인도매시장 대상 품목이 수산물도 포함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농안법」 제78조⁴¹⁾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임.

「농안법」 제78조의2에 따른⁴²⁾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41)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2)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임. 각 위원회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소속임.

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온라인도매시장의 대상품목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되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산물을 담당하는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거래질서의 유지 및 교육훈련 등

안 제20조(거래질서의 유지)는 누구든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이고,

안 제21조(교육훈련)는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0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	제21조(교육훈련)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u> 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매사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으로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매사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u>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나, 해양수산부 공동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정안 제20조제1항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에 대한 규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농안법」 제74조⁴³⁾는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안법」 제75조⁴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하여서도 「농안법」 규정과 유사하게 거래질서 유지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43)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4)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정안 제20조제1항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에 대한 규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김도읍의원안 제14조제1항의 “표준규격 표시” 위반 행위 또는 제14조제2항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준수” 위반 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예시할 필요가 있음.

(11)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보칙 관련

안 제22조(보고)부터 제25조(업무의 정지 등)까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 등 도매 주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명령·업무의 정지 등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26조(과징금)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청문) 및 제28조(권한의 위임)는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자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2조(보고)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u>농산물의</u>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u>농수산물의</u>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u>농산물의</u>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	②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u>농수산물</u> 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매자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명령)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운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매자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명령)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운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5조(업무의 정지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였을 때	제25조(업무의 정지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였을 때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라인도매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0. 제13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1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23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5.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온라인도매 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라인도매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0. 제13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1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23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5.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온라인도매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5.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3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8.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5.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3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8.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상장한 <u>농산물</u>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u>농산물</u>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경우 3. 상장한 <u>농산물</u>에 대한 매수인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4. 정가·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제25조제1항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상장한 <u>농수산물</u>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u>농수산물</u>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경우 3. 상장한 <u>농수산물</u>에 대한 매수인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4. 정가·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온라인도매판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에 해당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제25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에게는 1억원 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다만,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	매자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제25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에게는 1억원 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27조(청문)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취소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취소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도읍의원안에 동의하나,

① 시장운영자의 판매자, 구매자 보고사항을 삭제하고 제28조의 업무 위임·위탁 규정에 넣어 조문을 간소화하고(제22조제2항),

②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구매자 병행금지, 중도매인의 판매자 병행 불허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삽입하고(제25조제1항제4호, 제2항제4호),

③ 제26조제3항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자를 구분한 과징금 기준을 삭제(제26조제1항)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보칙 규정이란 법률의 실체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인 사항, 그 밖에 부수적인 사항 등 실체규정 부분에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의미함.

「농안법」은 제79조(보고), 제80조(검사), 제81조(명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과징금), 제84조(청문), 제85조(권한의 위임 등)을 제7장 보칙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농안법」의 보칙 규정을 제정안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및 「농안법」 비교>

제정안	「농안법」
제22조(보고) 제23조(검사) 제24조(명령) 제25조(업무의 정지 등) 제26조(과징금) 제27조(청문)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제79조(보고) 제80조(검사) 제81조(명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과징금) 제84조(청문)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제정안은 「농안법」을 차용⁴⁵⁾함으로써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안 제26조)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기존 「농안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도매인에게만 동 규정이 적용되는데 반해, 제정안은 온라인도매구매자에 대형마트 등을 포함함.

이를 감안하여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는 온라인도매판매자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김도읍의원안 제26조제1항).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구매자 병행금지, 중도매인의 판매자 병행 불허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5)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벌칙

안 제29조(벌칙) 및 안 제30조(벌칙)는 각각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31조(양벌규정)는 양벌규정을, 안 제32조(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무를 계속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무를 계속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2.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준 자 3.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위탁받거나 거짓으로 매수하여 거래한 자(제8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한 온라인도매판매자(제8조제5항제3호의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한정한다)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2.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준 자 3.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위탁받거나 거짓으로 매수하여 거래한 자(제8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한 온라인도매판매자(제8조제5항제3호의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한정한다)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u>농산물을 출하</u>(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임명한 경매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부과·징수한다.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u>농수산물을 출하</u>(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임명한 경매사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이 부과·징수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법무부

제32조제2항제3호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임명한 경매사 →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매사).

다. 검토의견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41조⁴⁶⁾에 규정된 형(刑)을 과하는 것으로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벌칙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46)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야 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행위주체 및 처벌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농안법」은 제86조(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를 제8장 벌칙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농안법」의 벌칙 규정을 제정안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유통주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오프라인도매시장의 벌칙 규정 체계와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제정안 및 「농안법」 벌칙 장 비교>

제정안	「농안법」
제29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 삭제
제31조(양벌규정)	제88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과태료)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

(13) 부칙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김도읍의원안은 해수부와 공동 소관의 법안이므로, 하위법령 제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

동 법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의견

김도읍의원안은 해수부와 공동 소관의 법안으로 하위법령 제정에 소요

되는 기간이 길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김도읍의원안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부칙에 타법 개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

※ 참고자료

참고 1 농산물 유통구조

- (산지유통) 다품목 소량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은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산지 수집 단계를 거쳐 소비지로 유통
 - '22년 기준 산지유통시설(APC)는 총 **583개소**이며, 전체 청과물 생산액(약 17조원)의 **30.0%**(5조 9,011억원)가 APC를 통해 유통 중
 -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주로 산지유통인이 포전거래 방식(발매기 거래) 등으로 수집하여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
 - * 도매시장 등록 산지유통인 1.5만 명 중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2천 명 안팎으로 추정
- (도매유통) 산지에서 수집한 원예농산물은 절반 이상('22년 기준 52%)이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거쳐 분산
 - '22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은 **13.9조원** 수준(가락 5.0)
 - * 도매법인 82개소, 시장도매인 60, 중도매인 6,216, 매매참가인 495, 경매사 1,007
 - 도매시장 내 유통경로는 경매방식*과 시장도매인방식('04)**으로 구분
 - * 도매시장에 출하·상장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 주관으로 경매하고, 이를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이 낙찰받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 **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경매 없이 "시장도매인"이 직접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 참고 :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



- (소매유통) 도매시장, 전문벤더, 산지직거래 등을 통해 농산물 판매
 - 슈퍼마켓 등 소매상은 주로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에게 농산물을 구매
 - 대형유통업체는 주로 산지직거래 또는 전문 벤더를 통해 조달

참고 2

공영도매시장 일반 현황(‘22년 기준)

□ 도매시장 분류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출하자
공영	33	107(41)	7,447	70	709,215
중양*	10	42(14)	4,414	8	296,289
지방	23	65(27)	3,033	62	412,926

* 농안법 상 해당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도매시장
(서울가락, 부산염곡, 대구북부, 인천남촌, 인천삼산,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부산국제)

□ 도매시장 거래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거래물량 (비중)		거래금액 (비중)	
전체	6,721	100%	151,057	100%
가락시장	2,317	34%	55,477	37%

□ 유통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도매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출하자	
				일반출하자	산지유통인
전체	2,367(1,127)	7,447	737	709,215	13,802
가락	559(298)	1,901	158	68,060	4,664

□ 거래제도별 거래실적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물량기준 (비중)	금액기준 (비중)
합계	6,721 (100%)	151,057 (100%)
경매	4,551 (68%)	100,997 (67%)
정가·수의	1,304 (19%)	28,645 (19%)
상장예외	491 (7%)	11,417 (8%)
시장도매인	375 (6%)	9,998 (6%)

참고 3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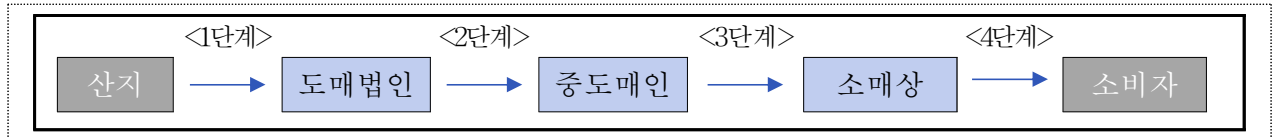
- 오프라인도매시장과 달리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판매자,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오픈마켓(Online Marketplace)

구분	오프라인도매시장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행위	▶ 개설 시장내 거래	▶ 제약 없는 전국 대상 거래
거래주체	▶ 소수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물량을 수집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생산자 직접 판매 불가) ▶ 중도매인은 경매 등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한 후 소비지에 판매	▶ 가입한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 가 자유롭게 거래(생산자 직접 판매 가능) - (판매자) 거래규모 기준 20억원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APC, RPC, 농협 등 - (구매자) 중도매인, 유통업체,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가공업체 등
물류	▶ 상물일치형 * 도매시장 반입 ⇨ 하역 ⇨ 경매 ⇨ 중도매인 점포 이동 ⇨ 소비지 배송	▶ 상물분리형 * 출하처 ⇨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
거래품목	▶ 청과·축산·양곡 등 부류별로 운영 * 가락시장(청과 및 수산), 강서(청과) 노량진(수산), 음성공판장(소, 돼지) 등	▶ 청과·축산·양곡 및 가공식품, 수산이 한 시장에서 거래 - 출범시: 39개 품목(청과 36, 축산 2, 양곡 1) → 현재: 135개(청과 104, 축산 6, 양곡 11, 가공농산물 2, 수산 11, 수산가공 1)
거래방식	▶ 경매, 정가·수의	▶ 정가·수의, 발주, 입찰, 예약거래('25~) 등 거래 방식 다양
수수료	▶ 시장사용료 : 0.5% ▶ 정산수수료 : 0.4% ▶ 위탁수수료 : 최대 7%(청과)	▶ 플랫폼사용료 : 0.3%('24.~'26년간 면제) ▶ 정산수수료 : 0.2%('24. 면제) <도매법인 위탁시> ▶ 위탁수수료 : 최대 5%(청과)
정산	▶ 대부분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대상 담보·신용에 따른 여신 제공 후 개별 정산	▶ 통합정산소: aT 정산소 이용(거래 확정 후 1영업일 이내 판매자 정산) ▶ 개별약정: 도매법인의 중도매인 여신 제공 등 ▶ 현금거래: 현금 선납부 후 거래시 잔액 차감

참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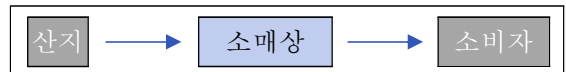
온라인도매시장 유통혁신 사례

□ 기존 도매시장 유통경로 : 4단계



□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창출 유통경로 : 2~3단계

① 산지와 소비지 업체 간 직접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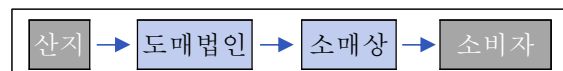


< 제주조공 - (주)오아시스 > '23.11.9.~

- ▶ (개요) 온라인도매시장 전용상품(감귤 3kg, 5kg) 개발하고, 중간단계 없이 제주에서 성남 물류창고로 직배송
- ▶ (실적) 128건 248톤 10억원
- ▶ (특장점) 기존 유통단계(3단계)를 거치지 않고 산지와 직거래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



② 도매법인 제3자 판매



< 동화청과 - 11번가(주) > '24.1.25.~

- ▶ (개요) 청송사과, 아산배 등 5개 품목을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 구매자의 인천 창고로 직배송
- ▶ (실적) 5건 6톤 5천4백만원
- ▶ (특장점) 도매법인이 소비지 업체가 요구하는 상품 구색을 갖춰 제공하고, 산지 직배송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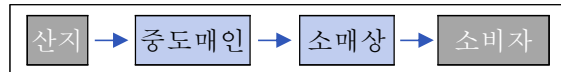
↓ 즉시할인중
[농할혜택가 24,900원]청송사과, 10~12내, 3kg, 1개
27% 49,900원
35,570원
★★★★☆ 125
🚚 당일출 1/29(월) 도착
11번가 추천상품
11번가x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 대아청과 - (주)리마글러벌 > '23.12.13.~

- ▶ (개요) 제주산 월동무를 청과법인 중개를 통하여 산지 직거래, 미국(LA) 수출을 위해 부산항 직배송
- ▶ (실적) 11건 206톤 1억1천3백만원 * 총 211톤 수출
- ▶ (특장점) 산지에서 수출항으로 직배송되어 운송단계 대폭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수출 상품 거래 가능성 확인



③ 중도매인 산지 직접 수집



< 녹색원 - 천호농산(중도매인) > '24.4.8.~

- ▶ (개요)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청주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영농법인으로부터 직접 마늘 구매
- ▶ (실적) 39건 7.7톤 4천2백만원
- ▶ (특장점)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위탁수수료(4.6%) 및 하역비 등 절감

